

의안 번호	제2799호
----------	--------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7월 08일
-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7월 21일
- 라. 의 결 일 자 : 2021년 07월 21일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생활안정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생활안정 지원 방법 및 결정 등 규정(안 제7조)
-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취소 및 환수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에게 생계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일부 대상에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 없음
11.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